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240
----------	------

발의연월일 : 2021. 2. 23.

발 의 자 : 고영인·서동용·허종식
최혜영·이형석·김병기
유정주·김민철·김두관
최연숙·김민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등을 폐기 혹은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식품의 판매와 섭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제13호 및 제4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13. “소비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어 있는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1.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p> <p>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 다. (생략) 라. 제조연월일, <u>유통기한</u>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생략)</p> <p>2. (생략)</p> <p>3. 건강기능식품 가.·나.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u>유통기한</u>”이란 제품의 <u>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u></p> <p>13. “<u>소비기한</u>”이란 제품의 <u>제조일로부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u></p> <p>제4조(표시의 기준) ① ----- ----- ----- -----.</p> <p>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유통기한, 소비기한</u>----- 마.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 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u>유통기한</u> 및 보관방법</p> <p>라. ~ 아.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다. <u>유통기한, 소비기한</u>-----</p> <p>-----</p> <p>라. ~ 아.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